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8. 7. / (총 1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팀 장 담당 자	김 성 훈 박 현 수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당 자	김 정 속 조 현 속		044-202-1720 044-202-172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과 장 담당 자	김 기 용 이 성 훈		044-201-3526 044-201-3527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	팀 장 담당 자	유 보 영 신 하 늘		044-202-1820 044-202-1813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과 장 담당 자	강 대 성 이 승 기		02-2100-8202 02-2100-767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TF팀	팀 장 담당 자	유 정 민 임 영 실		044-202-2419 044-202-24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현장점검 계획,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관리 대책, ▲對중국(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 해제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현장점검 계획,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관리 대책, ▲對중국(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 해제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입국 후 확진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부와 방역당국에게 국가별 통계 집계, 현지의 발급실태 점검 등 조치를 지시하였다.
- 또한, 해외건설 근로 현장 대부분이 의료여건이 열악하므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여름방학과 피서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고 있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일부 이용자가 QR코드보다 수기 명부를 선호하여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선제적 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할 것을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전공의 집단휴진 상황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확보된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의암댐 전복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사고 경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았다.
- 최근 카페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카페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아, 기존 카페 방역수칙을 보완·추가하고 별도 안내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 방역지침이 함께 마련*되어 있었으나,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하여 ‘카페 방역지침’을 시행(8.6~)하였다.
 - * ‘음식점·카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시행(5.6~)
 - 이와 함께, 카페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구체화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하였다.
 - 이용자는 카페 입장·주문 대기·이동·대화할 때, 음식(음료) 섭취 전·후 등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관리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도록 수칙을 마련하였으며,
 - 아울러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대기자 발생 시,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추가하였다.

- 이용자, 책임자·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카페 방역수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 대상]

- 카페에 입장·주문대기·이동할 때, 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야외 탁자가 있는 경우 야외 이용하기)
-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카페 내 이용객이 많은 경우 포장판매 이용하기)
- 음식(음료) 섭취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여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책임자·종사자 대상]

-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비치·안내하기
-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실시 또는 다른 손님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책임자(관리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기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기
- 카페 내 공용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휴게음식업중앙회) 협조를 통해 카페 방역수칙 홍보 및 책임자·종사자 교육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2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현황 및 추가과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현황 및 추가 추진과제'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해외건설 현장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장 내 공동생활시설에 머물러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5일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마스크·신속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해외건설현장 지침」을 개정*하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 강화하는 등 현지 방역지원을 강화하였다.
- *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어앰블런스 활용 권고, 사업장 내 출입객 관리강화 등
- 아울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화상의료상담서비스', 재외국민 119(소방청) 등을 통해 현지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더불어, 건설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 결과와 해외 확진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5개의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간 화상을 통한 협진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의료진의 현지 파견을 지원한다.

- ②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히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세관 등과 협의하여 통관·수송 절차를 지원한다.
 - ③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근로자가 신속하게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출국, 에어앰블런스 운항 등의 절차를 현지 보건·외교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하며,
 - ④ 이라크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내 귀국 시 단체·별도 항공편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⑤ 귀국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 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이라크 1차 귀국 건설근로자 임시생활시설 퇴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4일에 1차로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오늘 오전에 퇴소한다고 밝혔다.
- 입국자 293명 중 입국 단계에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은 7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사회복무연수원, 건설경영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 왔다.
- 이들 중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2명을 제외한 214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오늘 14일간의 격리된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다.
- 한편, 지난 7월 31일에 2차로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2명 중 22명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입원 중이다.
- 그 외 50명은 임시생활시설(건설경영연수원)에서 격리 중이며, 시설에 상주하는 의료진들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들은 8월 12일에 2차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8월 14일에 퇴소할 예정이다.

4 對중국(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 관계부처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 △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 그러나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며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8월 10일(월)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5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 ☐ 정부는 오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진료까지 포함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혔다.
- ☐ 전공의 휴업이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각 병원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근무 순번 지정 등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 특히, 응급의료기관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근무인력을 확보하게 조치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진료상황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 (www.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오늘 오전에는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휴진 대책을 논의하였다.
 - * 지자체와 각 부처 소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 공백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 당부
 -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 아울러, 의료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 전공의협의회와는 이미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여 전공의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 의사협회에서 요청한 소통협의체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의료계-정부 공동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계 제안 사항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행동 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안전신고 현황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293개소, ▲노래연습장 786개소 등 37개 분야 총 11,891개소를 점검하였고,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431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4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3개반, 463명)하여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13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629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한편 8월 6일(목) 신고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91건이며, 지금까지 총 2,248건이 신고되어 1,780건(79.2%)를 처리하였다.
- 7월 중반부터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과 음식점·카페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 증가하고 있어, 방학과 휴가기간 동안에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 * (PC방) 7월1주 149건 → 7월2주 264건 → 7월3주 160건 → 7월4주 207건 → 7월5주 321건
(음식점·카페) 7월1주 25건 → 7월2주 51건 → 7월3주 28건 → 7월4주 41건 → 7월5주 53건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317명이
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
자는 1,76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6)는 불시점검으로 흡연을 위해 아파트를 나온 무단이탈자
1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5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9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6일) 입소 120명, 퇴소 19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2명

- < 붙임 >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정(안)
2.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붙임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정(안) - 카페

1 이용자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카페 내 이용객이 많은 경우에는 포장판매 이용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 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
 - 야외 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야외 이용하기
-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음식(음료) 섭취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카페에 입장·주문 대기·이동할 때와 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는 하지 않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여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체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실시 또는 다른 손님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책임자(관리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기
- 음식(음료)을 섭취하는 경우 외(카페 입장·주문 대기·이동할 때와 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감독하고, 안내문 게시하기
-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고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 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 회의 등 장시간 이용 자제하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이용하고 야외공간 이용 활성화하기
-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기
- 카페 내 공용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 큰 소리로 말하기, 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기
-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소독하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 및 뚜껑, 물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등

붙임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